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74
------------	------

제출년월일 : 2006. 4.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신설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 나. 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지방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함과 동시에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비율을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반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2년간 인상을 유예하도록 하고,
- 다.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구민의 재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 조정 함으로써 구민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 하자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세법 제69조의2에 마련됨에 따라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4)
- 나. 현행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하던 것을 토지분 및 건물분 재산세 적용비율은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함. (안 제21조, 부칙 제2항)

다. 주택분 재산세 현행 표준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 조정함 (안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2006.3.20~4.10)결과 : 의견없음
- 3) 입법예고(2006.4.11~4.30)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구세”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동조

제1호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종로구통·반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
치 조례」”로 하고, “범위내”를 “범위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종로구세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서울특별시종로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서울특
별시 종로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범위내”를 “범위안”으로 한
다.

제14조의3제1항중 “서울특별시종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
시 종로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부구청장이고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 ③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중 “각호에 게기하는”을 각각 “각 호의”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에서”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27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만1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5
1억원 초과	20만4천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25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 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구청장은 과세대상이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7조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3조제1항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단서중 “서울특별시세조례”를 “「서울특별시세 조례」”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서울특별시세조례”를 “「서울특별시세 조례」”로 하며, 제25조, 제26조 및 제32조제2항 본문중 “각 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단서중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세 조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④(유효기간 경과후 적용례) 이 조례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의 근거) 구세의 세목, 과세 개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 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1조(과세의 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u>(이하 "구세"라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다음과 같다. 1. -----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2.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납세고지 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 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 범위안
제14조(구세심의위원회)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 구세심의위원회(이하 "구세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14조(구세심의위원회) ① --- 서울특별시 종로 구세심의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 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p>
<p>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p>	<p>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p>
<p>1.~5. (생략)</p>	<p>1.~5. (현행과 같음)</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 범위안-----.</p>
<p>⑤~⑥ (생략)</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p>
	<p>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 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는 자 4인 <p>③ 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 ----- ----- <u>각 호의</u> ----- ----- -----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17조(비과세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8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제17조(비과세적용자 신고사항) ----- ----- <u>각 호의</u> ----- ----- -----

현 행	개 정 안
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다. 1.~8. (생략)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4 (생략) ②(생략)	----- ----- ----- 1.~8. (현행과 같음)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 ----- ----- 각호의 어느 하나----- 1.~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21조(과세표준)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산정한 가액을 법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삭제〉 ③(현행과 같음)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생략) 3. 주택 가. (생략) <u>나. 가목 이외의 주택</u> 〈과세표준〉 〈세율〉 <u>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u> <u>4.000만원 초과 6천원+4.000만원 초과</u> <u>1억원 이하 금액의 1.000분의 3</u> <u>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초과</u> <u>금액의 1.000분의 5</u> 4.~5. (생략)	제21조의2(세율) ①----- ----각 호에서----- 1.~2. (현행과 같음) 3. 주택 가. (현행과 같음) <u>나. 가목 이외의 주택</u> 〈과세표준〉 〈세율〉 <u>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275</u> <u>4.000만원 초과 5만1천원+4.000만원 초과</u> <u>1억원 이하 금액의 1.000분의 2.55</u> <u>1억원 초과 20만4천원+1억원 초과</u> <u>금액의 1.000분의 4.25</u> 4.~5.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 행	개 정 안
	<p>③ 구청장은 과세대상이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p>